

## 1. 개정이유

신기술 사후평가서 제출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('21년도 국정감사)에 따라, 사후평가서 작성시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 사후평가서 작성자 확대(안 제54조, 별지 제21호 서식)

- 사후평가서 작성시,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(안 제54조)
-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에게 사후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발주청 담당자가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별첨,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

##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
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-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54조(신기술의 사후관리 등) ①<br/>(생략)<br/>&lt;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발주청이 사후평가서를 입력한 경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.</p> | <p>제54조(신기술의 사후관리 등) ①<br/>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책임자,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,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제4항-----<br/>-----<br/>----- 제5항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|